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82

발의연월일 : 2023. 2. 24.

발 의 자:한무경·조은희·박대수

권성동 • 유경준 • 서병수

김정재 · 김미애 · 엄태영

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최근 5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명령) ①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	
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
	<u>흥공단</u>
<u>20.</u>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19호</u>	<u>21.</u> <u>제20호</u>
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